

문서번호	재난관리과-5557	시 민			
결재일자	2014. 11. 6.	담당자	대응총괄팀장	재난관리과장	소방서장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전기옥	김재근	장세남	11/06 代 박충건
방침번호					

-재난현장 지원력 강화를 위한-

의용소방대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자체계획



서 초 소 방 서
[재난관리과]

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민 참여 고려 사항	● 시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전문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음브즈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령 및 기타 고려 사항	● 법령 규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예시 :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) 무 ■
	● 기타 사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빗물순환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우리말 <input type="checkbox"/> 인권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타 자원 의 활 용	●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기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관계 기관 및 단체 협의	● 관계 기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민간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언론 홍보 계 획	● 홍보 계획 :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자설명회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설명회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고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) 없음 ■

의용소방대원 안전사고 방지대책

목 적

- ❖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 보조업무시 안전사고 방지 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·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

I 추진근거 및 배경

- 현장지휘대-2005(2014.3.7.) 「2014. 의용소방대 운영 계획보고」
- 재난대응과-23717(2014.10.17.) 「의용소방대원 안전사고 방지대책 알림」
- 재난현장활동 증가 및 의용소방대 역할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상존
- 의용소방대원 안전관리 규정 부재(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 폐지 '13.5.27)

II 전국 안전사고 발생 현황(10년간)

- 총 118건 안전사고 발생 : 재해보상금 총 1,257,213천원 지급
-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(전국) ⇨ 서울 없음

계	2014	2013	2012	2011	2010	2009	2008	2007	2006	2005
118	6	10	58	14	9	3	8	3	3	4

※ 2012년 전국 안전사고 급증 사유 : 구미 불산 소방보조활동에 따른 경상 발생(48명)

- 유형별

계	교육훈련	구조활동	행사	화재진압	기타
118	10	50	10	27	21



○ 부상정도

계	사망	중상	경상	병원검진(구미불산)	비고
118	7	11	52	48	

※ 사망 7(행사관련 6, 훈련 1)

Ⅲ 안전관리 대책

1 의용소방대 “안전책임관” 지정·운영

○ 안전책임관 대상

- 남성 및 여성의용소방대 : 부대장(부재시 차선임자)
 ※ 부재시 차선임자 순서
 남성 : 총무부장→예방부장→기술지원부장, 여성:홍보부장→구호부장
- 지역의용소방대 : 지역대장(부재시 차선임자)
 ※ 부재시 차선임자 순서
 서무반장→예방반장→홍보반→구호반장
 ※ 대별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달리 지정·운영 가능

○ 안전책임관 운영범위

- 화재·구조·구급·재난현장활동 및 교육훈련 등 현장활동 전반
 소방홍보(캠페인), 등산목지킴이, 봉사활동 등 행사시 적용
 ※ 의용소방대 자체 대·내외 공적 모든활동시 적용

○ 안전책임관 임무

- 소방활동보조업무 및 각종 자체행사시 안전관리 총괄감독
- 현장활동 중 위험요인 발견시 소방지휘관에게 통보 및 전파
- 소방지휘관으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
- 신체적,정신적 이상 대원 파악 및 소방서 담당자에게 통보
- 안전장구 미착용 및 음주,질병 등 현장활동 부적합 대원 현장접근 통제
- 위험하게 현장활동 수행하는 의소대원 현장활동 중지명령
- 의용소방대 자체교육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업무
- 현장활동시 의소대원 복장 및 안전장구 적정 착용여부 확인
- 그 밖의 의용소방대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② 현장안전관리 및 현장활동기준

○ 통제권자

- 현장활동 : 소방서 현장지휘대장 및 인력동원 소집권자(지휘자)
- 교육훈련 : 소방서 담당과장(팀장) 또는 센터장

○ 통제범위 : 소방공무원에 준한 수준으로 현장안전 통제

○ 중점 통제사항

- 명확한 임무 지정으로 의용소방대 단독적 현장활동 금지
- 건물내부 진입, 지붕 등반 등 고위험 현장활동 지양
- 고임목 설치, 차량부서시 보조자 배치 등 소방차량 안전 확보
- 음주자 및 안전장구 미착용자 현장접근 통제
- 교육·훈련시 사전에 필히 신체적,정신적 이상 대원 파악 및 제외

○ 안전관리 불이행자 조치

- 1차 : 현장지휘자의 구두 경고
- 2차 : 대장(지역대장)이 해당대원 특별안전교육(2시간) 실시
및 마일리지 감점 3점 부여 (안전사고 발생시 감점 5점)
- 위험행동 반복 유발자 현장활동 제외

○ 현장활동 일반기준

소방대 도착시

-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소방대 보조활동
- 인명대피 및 주변 현장통제
- 수관 등 소방장비 이동지원
- 소방용수시설 수리점령
- 기타 지휘관 임무부여사항
- ※ 의용소방대원 복장착용

의용소방대 선착시

- 안전책임관 위험요소 확인·전파
- 인명대피 유도 및 주변 현장통제
- 소방대에 현장 정보제공
- 소방대 도착 전까지 현장진입 금지(화재,수난 등 모든 현장)
- 연소확대저지 및 옥외방수
- ※ 의용소방대원 복장착용

3 안전관리 교육 정례화

○ 교육시기

- 의용소방대 정기 교육시 : 월 1회 이상
- 신규대원 임명시 : 임명 1달 이내, 1시간 이상
- 지도·점검시 : 상 · 하반기 2회, 1시간 이상

○ 교 관

- 소방서 담당과장(팀장) 또는 센터장
- 자체교육시 : 의용소방대장(부대장)

○ 내 용

- 각종 안전장구 착용 숙달 훈련 및 안전한 장비 사용법
-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재난유형별 대처요령
- 의용소방대 사고사례 전파 및 유사사고 방지 대책 토론

4 각종 행사참석 등 현장활동 외 안전사고 방지

○ 체육행사시

- 고혈압, 심정지 질환 등 지병자 사전과약 후 경기출전 배제
- 과도한 음주행위 금지 및 음주자 경기출전 금지 조치
- 운동화, 훈련화 등 적정복장 착용(구두, 슬리퍼 착용 금지)
- 안전사고 대비 구급차량 전진 배치 등

○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석시

- 행사 개최시 음주자 과약하여 별도 귀가 조치(대리운전 등)
- 개별이동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및 단체이동 권장
- 폭설, 폭우 등 기상여건 악화시 소집교육 · 회의 등 자제

5] 안전사고 발생 사고조사 및 검토 · 평가 시행

○ 사고조사 ⇨ 즉시

- 대 상 :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제1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고 발생시

- 방 법 : 현장안전조사팀* 구성 및 현장조사 실시

*재난관리과장(대응총괄팀장) 및 의소대담당, 감찰담당, 관련 공무원

- 사고개요, 사고원인, 현장도면 등 필요한 사항 조사

○ 안전관리 검토 · 평가 ⇨ 15일 이내

- 참 석 : 사고당시 참여한 대원 및 현장안전조사팀
- 내 용 : 사고 및 안전위협의 원인, 제도적 문제점, 개선대책 등

IV

행정사항

- 각 부서장은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 철저히 의용소방대원

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운영 철저

- 각 의용소방대 대상으로 제도시행 취지 등 사전 교육 실시
(안전책임관, 불이행자 조치, 음주자 활동 배제 등)
- 의용소방대 안전활동 불이행자 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시
동향보고 철저